

- 법령이 아닌 사업지침으로 조례 준용 불가
- 아. 상위법령에 맞게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개정(별표 1)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붙임 2번 참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1호
 - 가) 예고기간: 2019. 9. 6. ~ 9. 26.(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주산지일괄기계화 사업 운용 시 기존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산지 일괄기계화 사업 용어 정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지도 규정, 임대 사용제한 단서 조항 등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의무 규정,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 규정 등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19. 10.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